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4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포항 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가. 성 명 :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주) 대표이사
 -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8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전기, 토목 등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포항시의 차별화된 관광시설 도입을 통한 종합 명품레저·휴양시설 조성으로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을 통해 포항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동해안 주변 경관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시설 구축을 통해 관광 도시로 받돋움코자 함
 -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번지 일원
 - 2) 총공사비 : 16,433,14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정류장 1동(4층, 연면적 4,076㎡), 주차장 1동(5층, 연면적 10,127㎡),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영일만해양케이블카(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3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소량기준 규정을 이관하고, 취급시설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적용 근거 변경 및 일부 삭제(안 제3조, 별표 4, 별표 5)

- (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산정 고시 적용 변경)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안 제3조로 이동
- (소량기준 산정 별표 적용 변경)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안 별표 4 및 별표 5로 이동
- 동일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각각의 취급량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규정 삭제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 발생 시 이전 설치기준 인정범위를 정비(안 별표 1)

- '14.12.31 이전 착공된 취급시설에서 시설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기준 적용 인정

다.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방식을 정비(안 제7조)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설기준 인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명확화

라.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추가안전 관리방안(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기적 시험 및 결과 관리 등) 적용
- (피해저감 시설기준) 집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감지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적용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1-14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됨에 맞춰 개정내용을 설치·정기·수시검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근거 법령 정비 및 설치검사 의무를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3조, 별표 1)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 및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
 - 장외영향평가서 제도 폐지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규정 삭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에 대해 기존과 같은 설치검사 의무 유지 및 관련 근거 명확화
- 나. 개정된 취급시설 고시에 맞춘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 (취급시설기준) 배관설비에 대한 재료,강도,두께 등 적합하게 사용가능한 범위 확대 및 규제 범위를 확대 적용할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 정비
 - (용어 정비) 일일취급량, 가연성화학물질, 방제물품 등 상위 법령의 정의와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chemical2020@korea.kr

○ 전화 : 043-830-4326, FAX :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